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15호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수도 요금 문자고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에 있어 정부 권장 정책 사항을 반영함과 함께 요금 업무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수도 요금 운영 관련 불합리한 사항 개선(안제19조,제25조,제27조 등)

○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적용 방법 변경(안제36조 별표4)

○ 상수도요금 문자고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근거 규정 (안제37조제1항제3호)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의안번호 제2020-198호(2020.5.25.)]에 따라 요금체납으로 단수 조치 후 공급재개시 해제수수료 폐지(안제39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821, FAX : (043)731-745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며 상수도의 파손, 누수 또는 오염 등 설비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르며,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종 적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업종 구분이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중 “전후 3개월분 1일 평균”을 “전후 3개월분 1일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도 동일기간 1일 평균”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를 “수도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수 또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세대수로”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사용자의 책임 없이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후 벽체 속, 지하 등 발견이 곤란한 곳에 누수 된 경우에는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다만, 요금의 감면은 2개월분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도요금 청구통지서 또는 납부고지서를 휴대전화로 수령하는 수도사용자 등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급수를 도용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제3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2조 본문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4를 별표 5로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상수도요금 감면내용(제36조 관련)

감면 대상	감면 내용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	5퍼센트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	20퍼센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라.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가정용 및 보훈단체 업무용인 경우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정용인 경우	
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세 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가정)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5톤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1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단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은 제외)
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중 심각 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 감면대상: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2. 감면기간: 3개월 이내 3. 감면요율: 20퍼센트 이내
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별표1의 사용구분 2단계까지만 적용
차. 착한가격 업소(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군수가 따로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0퍼센트
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함

비고

1.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2. 다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3. 아목은 아래의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별표 5]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제42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1. 급수도용	o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다만, 가정용은 2배	50,000원	o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2. 승인을 받지 않은 급수공사	o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다만, 가정용은 2배	20,000원 다만 가정용은 10,000원	o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3. 계량기 작동방해, 훼손, 무단철거, 무단이설 또는 망실	o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다만, 가정용은 2배	20,000원 다만 가정용은 10,000원	o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o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매몰, 공작물 설치로 인한 검침 장애 및 봉인 파손	o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다만, 가정용은 2배	10,000원 다만 가정용은 5,000원	o 원상회복명령 다만, 봉인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20,000원	o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6. 소화전의 무단사용		10,000원 다만 가정용은 5,000원	o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을 무단개전		10,000원 다만 가정용은 5,000원	o 종전 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승인없는 업종 변경			o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정 o 업종직권변경 o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며 상수도의 파손, 누수 또는 오염 등 설비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르며,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종 적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업종 구분이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생략)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정상계량된 전후 3개월분 1일 평균 사용량과 정상작동 후의 5일간	② ---------- ---------- ---- 전후 3개월분 1일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도 동일기간 1일

사용량의 1일 평균 사용량을 합산하여 계산된 평균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 산정에 적용한다.	평균 ----------.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 수도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 수 또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세대수로----------.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수도법」에 따른 중수도 설치·운영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사용자의 책임 없이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후 벽체 속, 지하 등 발견이 곤란한 곳에 누수 된 경우에는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다만, 요금의 감면은 2개월분에 한정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용개요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② 군수는 사용자의 책임없이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후 벽체 속, 지하 등 발견이 곤란한 곳에 누수 된 경우에는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다만, 요금의 감면은 2개월분에 한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가구에 대하여 당월 수도요금의 5톤(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가구로서 가정용인 경우 2.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가정용 및 보훈단체 업무용인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	않다.

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정 용인 경우 4. 삭 제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⑤ 군수는「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별표1의 사용구분 2단계까지만 적용한다. 단, 학교, 유치원의 고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군수는 착한가격 업소(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군수가 따로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 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대상: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2. 감면기간: 3개월 이내 3. 감면요율: 20퍼센트 이내[항신설 2020.5.29.] 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감면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항신설 2020.5.29.] ⑨ 군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이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다자녀 가구로서 가정용인 경우 당월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 제3항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경우 수도 사용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20.12.18.>	
⑫ 삭 제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도요금 청구통지서 또는 납부고지서를 휴대전화로 수령하는 수도사용자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제39조(정수처분) ① ----------. ----------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
<신 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수료----------
2. 급수를 도용한 자	<삭 제>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3. 급수를 도용하거나 군수----------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과태료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	제42조(과태료 등) ---------- 별표 5----------

한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